경리인코너

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(Gross-up)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

상담실 백종훈 차장

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되는 것이 원칙인데,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(14%)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,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(14%)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.

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.소득세법.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.

그리고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액화 배당가산을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게 된다.

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은 11%이다

"배당가산액"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 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/100을 가산(Gross-up) 하는 금액인데,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(Gross-up)한 금액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하는 것이다.

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(Gross-up)액은 반영하지 않는다.

[사례]

E 1 - 13			
	이자소득	① 10,000,000원	기준금액
금	배당소득	② 10,000,000원(2천만원 채우는 금액까지는 배	
융	, ,	당가산 안함)	(20,000,000원)
소	(상장)	③ 10,000,000원(총액화 배당가산)	
득	배당소득	() 20,000,000의(초애형 메다기사)	종합과세
'	(비상장)	④ 20,000,000원(총액화 배당가산)	(80,000,000원)
사업소득 과세표준		⑤ 50,000,000원	

※ 종합소득공제금액은 0으로 가정함

(1)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

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때의 산출세액(종합과세 방식)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(분리과세 방식)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게 된다.

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

- = $(2천만원 \times 14\%) + [(2천만원초과 금융소득 + 여타 종합소득금액) 종합소득공제] \times 기본세율$
- = (20,000,000원×14%) + [(30,000,000원 + 30,000,000×11%) + (50,000,000원)]×기본 세율
- = 2,800,000 + 14,232,000 = 17,032,000원

(L)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산출세액

- = (금융소득×14%) + (여타 종합소득금액-종합소득공제)×기본세율
- = (50,000,000원×14%) + (50,000,000원×기본세율)
- = 7,000,000원 + 6,240,000원 = 13,240,000원

따라서 종합과세방식(⑤)의 세액이 대부분 더 크므로 17,032,000원이 세액으로 결정된다.

- (2) 배당세액공제는 다음 ③와 ① 중 적은 금액인 3,300,000원을 적용
- ① 배당가산액(Gross-up금액)
 - =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×11% = 30,000,000원×11% = 3,300,000원
- 종합소득산출세액 원천징수세율방법의 산출세액
 - = 17,032,000원 13,240,000원 = 3,792,000원

(3) 납부세액

17,032,000원(산출세액) - 3,300,000원(배당세액공제) = 13,732,000원

2024 · 05 · 15 www.eAnSe.com 7